

# 자가보험제(Captive Insurance) 도입의 효과 및 전망

## (금융허브로의 진입을 위한 대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정영천

### Abstract

캡티브 보험사(Captive Insurance Company) 설립을 통한 모기업의 위험관리는 최근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체 위험전가 수단의 하나이다. 캡티브의 활성화 이유로는 기업의 다양한 위험 증가에 불구, 이를 커버할 수 있는 기존 보험시장의 상품이 부족하고, 전가시에도 기업이 판단하는 위험 대비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황하에서, 캡티브 설립을 통해 모기업은 고유의 위험 전가가 가능하고 보험료가 자회사로 투입되는 경제적 이점을 갖게 되며, 캡티브사를 통한 제3자 위험 인수로 보험산업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고,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등 긍정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캡티브의 국내 도입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금융허브 목표 추진에 도움을 주는 정책수단 제시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캡티브의 설립 및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캡티브의 설립 유인 제공을 위한 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목차

---

1. 도입부	5. 캡티브 설립시 검토 사항
2. 자사보험제 개관	5.1 캡티브 설립시 고려사항
2.1 정의 및 구조	5.2 캡티브 설립지역 선정 고려 사항
2.2 캡티브 설립 유인	5.3 캡티브 설립 과정
2.3 캡티브 구조 및 운영	5.4 성공적 캡티브 운영을 위한 조건
3. 캡티브의 위험 결합	6. 캡티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변화
3.1 위험결합의 이점	6.1 미국 버몬트주의 캡티브 활성화 방안
3.2 위험결합의 예 - Nexus case	6.2 캡티브 보험사에 대한 미국 연방 세법 규정
4. 캡티브 가치 최적화를 위한 참여자의 역할	6.3 캡티브 도입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
4.1 설립시 참여자	7. 결론
4.2 참여자들의 역할	

---

### 1. 도입부

기업의 위험관리 수단은 관리의 효율성과 비용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효율성이란 위험노출 파악, 위험 보유 및 전가에 대한 기업의 성향하에서, 기존 보험시장으로의 전가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 기업의 위험관리 정책을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기존의 보험산업은 다양한 기업의 위험에 대한 적용 상품의 부족문제, 자본적 한계에 따른 공급의 부족 및 보험료의 증가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체위험전가 수단이 발달하기 시작 하였으며, 그 중의 하나가 자사보험사(captive insurance company, 이하 캡티브)의 설립이다. 캡티브는 모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자기 내부 기업에 지급하면서 보험료에 대한 손비인정을 받게 되며, 기존 보험사가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 고유의 위험을 충분히 전가하게 된다. 또한, 자회사인 캡티브 입장에서는 단일의 캡티브, 그룹 캡티브 등의 형태를 통해 인수한 모기업 및 관계기업의 보험료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며, 제3자의 위험도 추가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됨으

로써, 사업영역의 확대, 투자기회의 확대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설립지역의 조세 및 설립요건에 대한 특혜가 필요한 바, 대부분의 캡티브사가 조세 회피처에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캡티브사의 고용 증대 및 지자체의 세수확대에 도움을 주는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버몬트주는 기존 캡티브 설립지역 특혜에 뒤지지 않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2010년도 기준 전세계 캡티브의 약 1/5을 유치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캡티브를 통한 외국의 보험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금융정책의 목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2장에서 캡티브에 대한 정의, 구조 및 운영과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캡티브의 기본조건인 위험 결합에 대하여 알아본다. 4장에서는 모기업을 비롯한 캡티브 참여자들의 최적 역할을 제시하며, 5장에서는 설립시의 제반 고려사항을 개관한다. 다음 6장에서는 보험허브를 목표로 하는 수단으로서의 캡티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7장은 결론으로서, 캡티브 활성화의 목표를 제시해본다.

## 2. 자사보험제(Captive Insurance) 개관

### 1. 정의 및 구조

#### (1) 자사보험제란 무엇인가?

위험전가 수단 부족, 높은 보험료 및 인수심사에 대한 불안등의 이유로 전통적 보험사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파생되기 시작한 자사보험사 설립 추세는 2010년도 기준 5,500여 개사가 설립되어 있고, 연간보험료도 500억불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기업의 보험대체수단(Alternative Risk Transfer Vehicle)<sup>1)</sup>, 비

---

1) 대체보험시장은 자가보험(Self Insurance), 공제한도 확대 및 조건부 재무계약(Contingent

용절감수단 및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서 나타난 자사보험제는 최근에 와서는 점차 타사의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보험료 수입을 증대하여, 포트폴리오 효과를 가지도록 변화하고 있다. 전통보험시장의 고객 니즈 충족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대체보험수단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보험시장의 축소 및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악순환 구조는 캡티브의 발전 가능성<sup>2)</sup>을 더욱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 캡티브란 무엇인가를 정의해 보자. 캡티브란 자사의 위험을 기존 손해보험사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이전함으로써,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업 고유 또는 거대 손실위험이나 시장에서 이전가능 하더라도 자사의 위험수준에 비하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비용면이나 공급측면의 이점을 획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전속보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사 위험만을 전속으로 담보하는 기능 외에도 캡티브 총 수입보험료의 일정비율<sup>3)</sup> 이상을 자사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캡티브로 분류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캡티브 보험사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첫째, 모기업 및 모기업 집단의 위험을 전속으로 커버하기 위해 설립된 보험사이다.

둘째, 캡티브는 모기업의 보험정책에 따라, 위험의 자가보유, 보험료의 절감, 세금 감면 및 보험시장 진입을 위한 이점을 향유한다.

셋째, 소유기업의 수에 따라, 단일 캡티브(single captive) 또는 그룹 캡티브(multi-owned captive)로 분류되어, 동일 업종의 위험을 커버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사위험뿐만 아니라 위험 포트폴리오 구성의 이점을 위해 타사의 독립적 위험도 인수하는 광의의 캡티브도 나타나고 있다.

---

Financing contract)과 자사보험사 설립 등으로 나누어진다.

2) 1994년도말 3,194개였던 캡티브 숫자가 2010년말 5,500개를 초과하게 되어 15년간 70%의 증가가 있었으며, 보험료 기준으로도, 1994년도 140억불에서 500억불로 3.57배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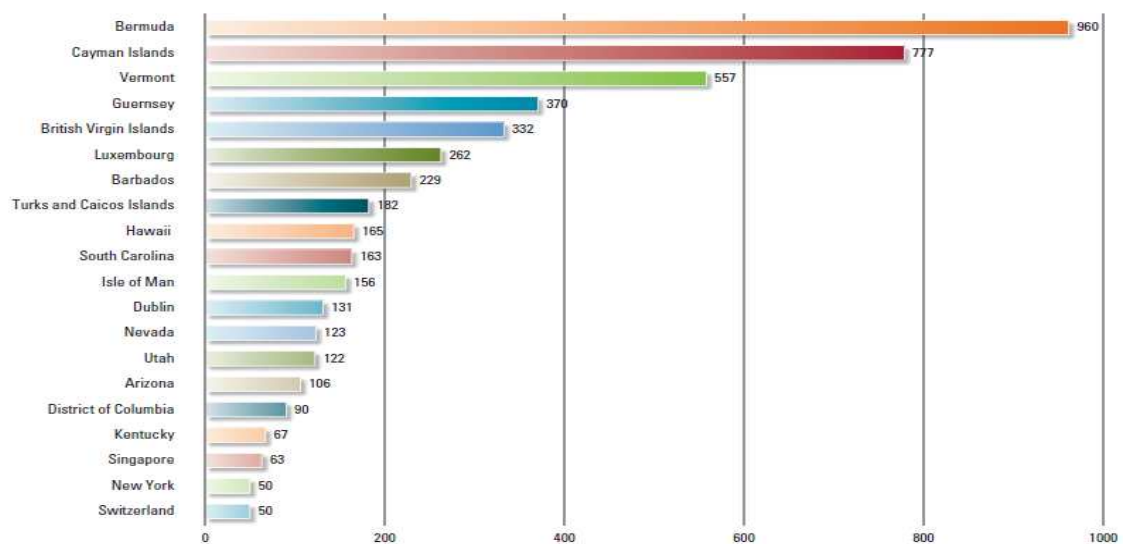
3) 미국의 경우, 캡티브 수입보험료의 50% 이상을 모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캡티브보험사로 분류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캡티브가 점차 영역을 전통 보험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캡티브 보험사라는 용어보다는 캡티브성 보험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 (2) 캡티브시장 현황

2008년 이후, 전 세계 캡티브 보험사는 5,000개를 넘어 설립되어 있으며, 연간 보험료 U\$500억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3대 캡티브 설립지역인 미국 Vermont 주의 경우, 2011년도 41개의 신규 캡티브가 설립되어 총 952개의 캡티브사를 보유하고, 전통적인 캡티브 거점인 버뮤다 및 케이먼섬을 추격하고 있다. 41개 신규 캡티브 중 30개는 단일 기업 캡티브이고, 6개는 위험보유그룹(Risk Retention Group), 3개는 자본참여 그룹, 나머지는 각각 산업그룹과 협회의 소유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위험집단의 캡티브 설립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체위험전가에 대한 보험 수요가 전 산업분야에 걸쳐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1>지역별 캡티브 보험사 영업 현황(2008년)



(자료) 2010 KPMG LLP Captive Insurance Benchmark Study

## 2. 캡티브 설립 유인

기존 보험산업의 기업 고유 위험에 대한 공급 부족 및 보험료 증가에 대한 대체수단 중 하나인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기업들이 진출하려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재무적 요인

재무적 요인으로는 먼저, 캡티브 투자에 대한 수익과 손비인정을 통한 세금 혜택에 대한 수요로서 모기업은 자신의 위험전가와 보험료를 통한 추가 수익 발생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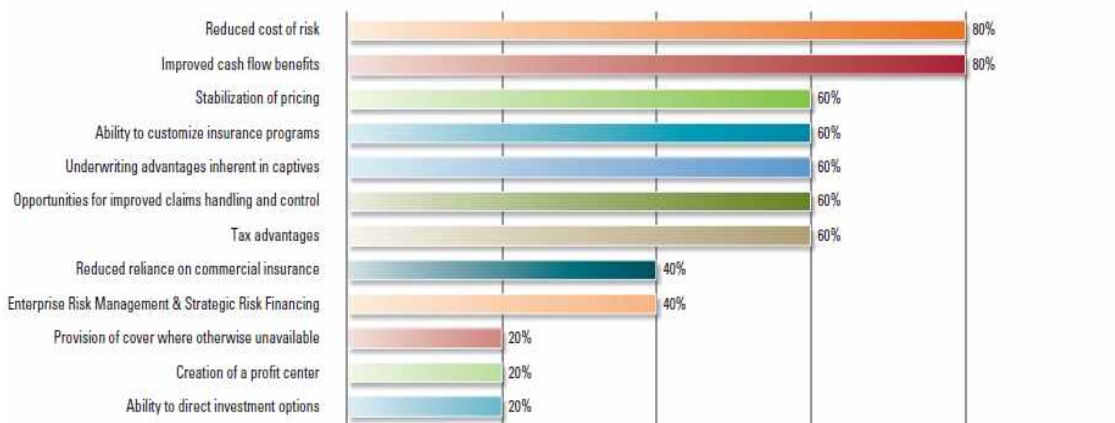
둘째, 정확한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보험료의 감소와 부대 거래비용의 감소로서, 모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위험에 합당한 보험료의 부과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위험을 전가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다.

셋째, 클레임 처리비용 및 보험인수시의 비용도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2) 위험관리 요인

캡티브를 통해 모기업은 주기적인 (재)보험시장의 싸이클 변동 위험을 감소시켜 안정적인 보험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재보험에 대해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해져 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그림2> 캡티브 보험사 설립 요인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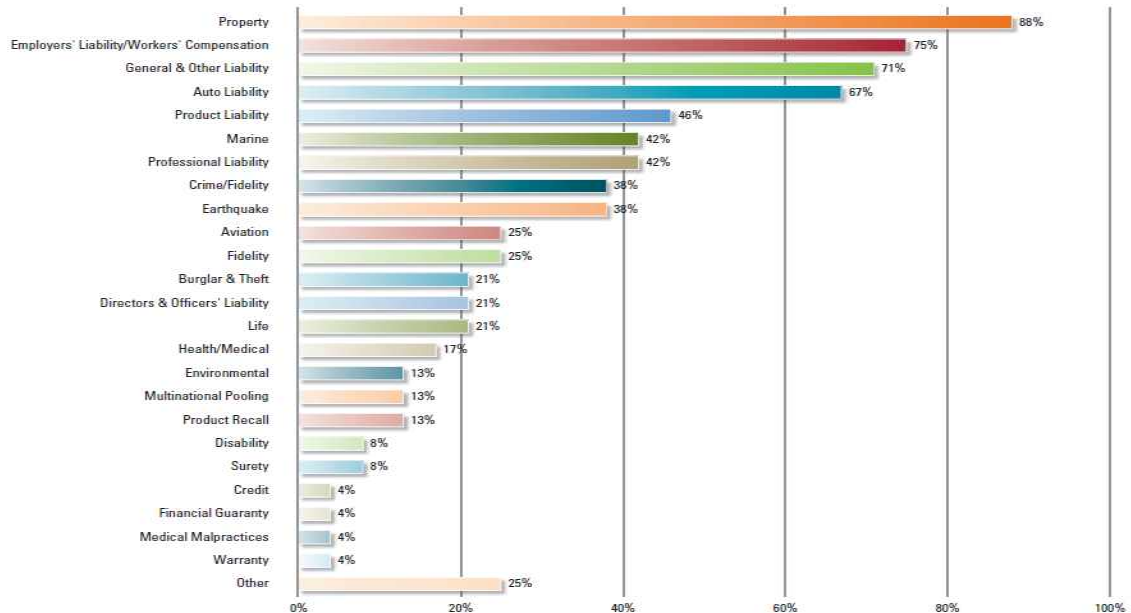


(자료) 2010 KPMG LLP Captive Insurance Benchmark Study

### 3. 캡티브 운영 종목

캡티브가 운영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면, 2010년도 기준 재산보험은 전체 캡티브의 88%, 종업원 배상책임 및 보상보험 75%, 일반 배상책임보험 71%, 자동차 배상책임보험 67% 및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46% 등으로서 대부분의 캡티브는 모기업의 재산 손해 및 배상책임보험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시장에서는 기업이 인지하는 재산위험 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배상책임보험의 시장공급이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위험 파악을 통한 보험료 부과와 계속 확대되는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경영정책이 요구됨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3> 캡티브가 담보하고 있는 종목별 비중



(자료) 2010 KPMG LLP Captive Insurance Benchmark Study

## 제 3장 캡티브의 위험 결합

### 1. 위험결합(risk pooling)의 이점

많은 캡티브들은 모기업의 위험외에 제3자의 관련성 없는 위험(unrelated third party business)을 인수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며, 세무 목적상 모기업 위험전가라는 선의 보험사(bona fide insurance company)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즉, 손실에 대한 공제액을 증가시킴으로써 캡티브의 운영 비용을 경감한다. 또한, 대부분의 캡티브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적인 인수 및 보상담당자를 직접 고용하지는 않고 있다.

캡티브는 비례보상 재보험(quota share reinsurance) 방식으로 참여하는 동종 캡티브사와의 위험풀에 가입함으로써, 3자 위험인수에 있어 사전 검색이나 사전인수와 같은 효과를 누리며, 적절하고 지분에 맞는(on fair & equitable) 원보험을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효과를 통해 캡티브는 모기업의 개별위험만을 담보하였을 경우보다 상대적인 위험발생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갖는 이점이 있다.

#### (1) 보험 결합(insurance pooling)을 통한 캡티브의 세무적 이점

보험사는 손실준비금 적립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위험 자기보유(self insurance)에 비하여 5%~12%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캡티브사가 보험사로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비관련 3자 위험 인수에 따른 보험료가 30%~50%를 차지해야 하고, 최소 12개 자회사중 7개 이상은 기업 전체 위험의 15% 이내만을 부보해야 한다.



## (2) 위험결합 참여 조건

캡티브사간 위험 결합(pool of peers)을 통한 세무적 이점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3자의 위험을 인수하고 손실을 부담하며,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손실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 보상(workers' compensation), 자동차 배상책임(Auto liability) 및 일반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에서의 기대 손실금액이 최소 US\$2.5백만 이상이어야 하며, 향후, 손실액에 따른 자본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 (3) 캡티브간 위험결합의 성공가능성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들은 자신의 캡티브를 통해 예상 손실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업의 개별적인 위험을 동종 위험간의 포트폴리오(pool)에 비례적으로(quota share) 이전한다. 인수와 요율산정 면에서의 동일 방식 적용, 소급요율제 적용 배제, 위험결합체 참여비율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의 기준도 적용된다.

상기 조건하에서 각 캡티브는 결합체(pools)의 전체 보유위험에 대하여 참여 비율 해당분을 인수하며, 결합체(참여 캡티브간 계약에 따른 재보험)는 모든 손실을 책임지게 된다.

## 2. 위험결합의 예 - Nexus Re. case<sup>4)</sup>

United 보험사의 100% 자회사인 Nexus Re.는 Aon사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Nexus는 30년 동안 캡티브사에 대하여 위험결합(risk pooling)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사는 개별기업의 위험을 동종위험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로 교환해주는 위험 변환(risk conversion) 기능을 제공해 준다. Nexus는 동 기

---

4) Aon, 2011, Captives & Risk Pooling, *Bermuda captive conference*

능의 수행을 위해 자신의 보유위험을 각 캡티브사에 재재보험(retro-ceded)으로 전가한다. 통상 매년 1월1일에 계약이 갱신되며, 열거위험에 대하여 재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재보험계약은 신규 사업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각 캡티브는 결합체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손실액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부담방식으로는 매년 1월1일에 참여분을 확정(provisional share)하고, 연중 참여비율을 계속 조정해 가며, 모든 약정 위험의 인수 후, 최종 비율 조정을 통해 포트폴리오에 참여하게 된다.

Nexus의 계약과정을 예시해 보면, 개별기업이 캡티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캡티브사는 위험 인수 및 재보험 가입(Nexus 또는 타 재보험사)을 실행한다. Nexus는 캡티브사로 부터 단순재보험방식(facultative cession)으로 재보험을 인수하고, 그 이후, 모든 재보험계약을 다시 캡티브사들에게 재재보험으로 분산시킨다. 그 과정을 도해하며 <그림4>와 같다.

<그림4> Nexus Re. Pool - 계약 흐름도



## 제 4장 캡티브 가치 최적화를 위한 참여자의 역할

캡티브 보험사를 설립, 운영, 발전 시키는데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여러 참여자가 있는 만큼 그들 간의 팀워크가 중요하며, 팀워크를 통해 캡티브의 가치를 어떻게 최대화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캡티브 보험사에는 설립 모기업, 컨설턴트, 원수보험 브로커, 재보험 브로커, 계리사, 세무 컨설턴트, 재무 및 회계 담당자와 법률 자문가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단계별로 각 참여자의 활동을 알아본다.

### 1. 설립시 참여자

모기업의 캡티브 설립 계획과 설립지역(Domicile)이 결정되면, 우선적으로 모기업과 캡티브 경영진, 변호사 및 설립지역 관할 공무원이 참여하여 설립 과정을 진행한다. 캡티브가 설립되어 보험계약의 인수가 진행되면서 설립시의 참여자들 외에 계리사, 보험 및 재보험 브로커, 세무 및 법률 자문과 자산 및 보험료 투자 담당자가 활동하게 된다.

캡티브사의 성공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모기업과 캡티브 자체의 기회 요인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보험시장, 규제내용, 법률, 위험, 투자환경 및 모기업의 사업 등 제반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동 참가자들의 협력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캡티브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에서는 각 참여자들의 역할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5> 캡티브 참여자들의 역할 관계



## 2. 참여자들의 역할

### (1) 캡티브 소유 기업

소유 기업은 캡티브 보험사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각 참여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소유 기업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각 참여자의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캡티브 관리자 및 주요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캡티브 보험사가 자신의 사업 욕구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 (2) (재)보험 브로커의 역할

보험 브로커는 보험계약자(소유 기업 또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위험과 노출 정도를 분석, 보험시장에서 가입 기간과 조건(terms & conditions)을 조정하여 보험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캡티브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시장의 보험 공급량과 시장 특성의 변화<sup>5)</sup>에 따른 캡티브의 업무 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약관에 대한 검토 및 보험계약자의 요구 사항에 대한 피드백도 수행한다.

또한, 손실사정, 사고처리서비스 대행,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5)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보험시장의 연성 및 경성 사이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계리사의 역할

계리사는 보험 상품의 가격 결정 외에도,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한 수치화된 자료의 제공, 보험 상품에서의 위험 요인 분석,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예상, 보험사 자산 건전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캡티브의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한다. 계리활동의 예로서는 자산유보율 분석, 계리보고서 작성, 자금조달 및 보험료 예측, 위험보유 분석(Retention analysis), 재무계획, 위험분산 계획, 자산 건전성 분석 등이 있다.

### (4) 세무 컨설턴트의 역할

세무 컨설턴트는 적절한 내부 절차(Due diligence process)에 따라, 세무 관련 자문을 제공한다. 세무 자문은 캡티브 설립 이전부터 행해지며, 국내 및 국외 세법체계의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자문이 필요하다. 캡티브 관련 세무 이슈는 자산 보유세, 보험인수 및 재보험 영업시의 세무 문제, 세무 보고서의 작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캡티브 경영진의 역할

캡티브 경영진은 소유 기업의 캡티브 설립 목적, 사업 및 영업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유 기업의 위험 및 노출 정도를 파악한다. 또한, 소유 기업 및 캡티브 보험사 소재지의 관련 법령과 변경 내용을 항시 습득하여 캡티브의 발전 영역 및 기회를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 참여자들의 전문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다.

캡티브 보험사의 설립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참여자가 각 전문 영역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에선 참여자간의 소통이 원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캡티브 소유 기업 입장에서의 설립 목적과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가치를 최대화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캡티브 소유자의 목표와 캡티브 경영진의 조정 능력 등이 함께 발휘되어 시장에서의 기회와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보험사 운영이 가능하다.

## 제 5장 캡티브 설립시 검토 사항

캡티브 보험사 설립을 위해서 권고되고 있는 일반적인 과정은 5단계로 구분된다. 다음의 각 단계는 캡티브 설립 모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복잡성과 손실 정도(complexity & severity)에 따라 시간이나 비용이 각기 달리 소요되므로 캡티브 설립 기업은 자신의 특성에 맞도록 설립 준비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1. 캡티브 설립시 고려 사항

캡티브 설립을 통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S&P 500대 기업이나, 포춘지 2000대 기업 중 50% 정도가 캡티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립 검토 중임을 볼 때 캡티브를 통한 기업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제도 및 정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캡티브가 오히려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캡티브 설립의 실행 가능성 및 효과분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1) 보험료의 크기

설립 초기 비용이나 운영 비용 감안시,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과소할 경우, 캡티브 설립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캡티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연간 보험료는 US\$1백만 정도이다.

#### (2) 과거 사고 경험 자료 수준

과거의 사고 경험이 우수하고, 추가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발생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면, 기존 보험 산업의 싸이클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의 큰 증가를 경험한 기업은 캡티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기존 보험 시장 접근성

기존 보험 시장에서 인수가 어렵거나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위험 전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sup>6)</sup>, 캡티브 설립이 기업 위험관리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4) 기업의 위험 보유 성향(risk appetite)

캡티브는 기본적으로 자기보험(self-insurance)의 정형화 및 구조화된 형태이므로, 적극적으로 위험 전가를 원하는 기업은 캡티브 설립보다는 기존 시장이나 다른 대체위험전가 수단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전문인력 확보 여부

캡티브는 세무, 회계, 법률 및 정부 규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설립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바, 기업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 2. 캡티브 설립 지역(domicile) 선정시 고려 사항

캡티브 설립에 대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캡티브가 주로 설립되어 있는 역외 지역이나 자국 내에 설립시,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버뮤다, 케이먼등에 캡티브를 설립하여 왔다. 그러나, 2001년도 이후에는 자국내에도 캡티브를 설립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의 장점 요인과 단점 요인을 고려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라, 각 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립지를 결정한다.

### (1) 역외(offshore) 설립시 장점

역외 캡티브 설립 결정을 보면, 3자 위험 인수, 규제의 유연성 및 세계 혜택의 세 가지 장점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

6)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의료사고 보험이 좋은 예이다.

### 가. 제3자 위험 인수(third party risk)

역내(onsshore) 캡티브가 모기업과 통제가능 비관련 기업(controlled unrelated business)의 위험만을 인수하고 있는데 반해, 역외 캡티브는 다른 기업의 위험을 인수한다. 이 경계는 최근에 많이 완화되고 있으나, 3자 위험 인수비중에 따라 세무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 나. 유연한 규제환경

규제 측면에서 역외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외 지역이 제시하는 자본 및 영업 규제의 완화이다. 설립 최소자본금이 역내에 비하여 작으며, 정기적인 검사 의무 등이 면제된다. Sarbanes-Oxley 법안<sup>7)</sup> 등 미국 내의 내부통제 및 공시 강화 규제등은 기업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 다. 세제 혜택

캡티브 역외 설립의 중요한 이유였던 세제 혜택의 일부가 미국의 경우 역내 캡티브에게도 점차로 주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보험료 수입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역외 캡티브는 세금을 절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캡티브 과세문제는 매우 복잡한 주제로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 (2) 역외 설립시의 단점

역외 설립의 기회비용으로 자국내 설립 캡티브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혜택은 포기하여야 하며, 일부 보험종목<sup>8)</sup>에 대하여는 역외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영업허가세(licencing tax)등은 오히려 역외가 더 클 수도 있다. 그 외에 역외의 경우, 관리, 회계 및 법률자문 비용 등이 국내보다 상당히 높으며, 모기업의 관리 및 출장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조세피난처의 오명을 갖는 역외 지역 특성상 기업의 글로벌 명성과의 관계도 유의하여야 한다.

7) 2002년도 Enron 파산이후, 기업의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무보고서에 대한 기업 책임, 재무자료 작성의 프로세스화 및 정보의 실시간 공개 등을 명시(302조, 404조 및 409조)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미 국내에도 도입되어 있다.

8) 미국의 경우 ERISA에 따른 종업원 복지 프로그램의 가입은 역내에서만 인수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캡티브 거점지역의 선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는 운영 비용, 접근성, 규제 정도, 세제 혜택, 기업 인지도와 명성에의 영향 및 사업 기반 구조 등을 들 수 있는데,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각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거점지역 결정에 참고해야 한다.

### 3. 캡티브 설립 과정

캡티브의 효율적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5단계가 추천되고 있다.

#### (1) 사전 타당성 분석(pre-feasibility analysis)

캡티브 설립을 위한 최초 단계인 타당성 분석은 보통 캡티브 매니저나 컨설턴트가 수행하며, 기존 보험 내용 및 손실 경험 파악, 기업구조 및 산업 위험등을 분석한다. 이 단계는 향후 캡티브 설립시 장애가 되는 요소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 (2) 설립 타당성(feasibility or viability study) 분석

설립 타당성은 계리 분석, 재무 및 운영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 가. 계리 분석

독립적인 계리사는 모기업의 위험분석, 과거 손실 경험, 손실의 빈도 및 심도와 대규모 위험 발생 가능성등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보험료 분석을 시행하여, 위험보유 평가, 보험료 결정, 자본 투입량 등을 결정한다.

##### 나. 재무 및 운영 평가

캡티브 매니저는 모기업의 재무구조, 잠재 보험계약자, 및 내부 위험보유량과 공제한도, 회계 및 세무 방법 등을 분석하고, 가상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표를 예상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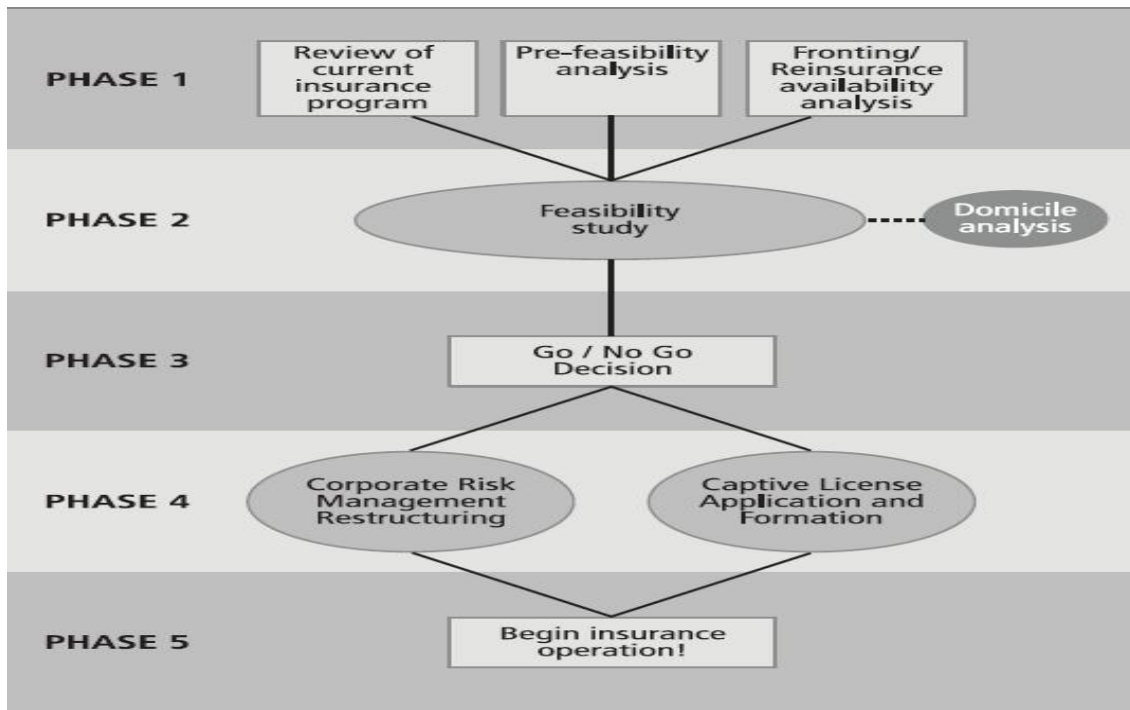
### (3) 캡티브 실행 및 설립 형태

캡티브의 설립 진행에는 매니저 등 경영진, 계리사, 재무 및 세무 전문가가 함께 활동하며, single captive, group captive 또는 rent-a-captive 등의 설립 형태를 결정한다.

### (4) 설립시 필요 서류

거점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설립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설립신청서, 경영진 이력서, 타당성 보고서(계리 보고서), 사업계획서, 5년간 재무제표 계획서, 수수료 지불 대상 참여자(회계사, 계리사, 변호사등), 모기업 재무제표, 보험증권, 재보험계약서 및 설립 수수료 등이다.

<그림6> 캡티브 보험사 설립 과정 도해



(자료) Wilmington Trust Captive Management Services

## 4. 성공적인 캡티브 운영을 위한 조건

모기업의 장단기적 목표에 부합되도록 캡티브 보험사를 설립하여 운영함

으로써, 성공적인 캡티브 설립과 운영을 이룰 수 있다.

(1) 위험분산과 손실예측의 정확성

자신의 위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모기업은 제3자 기업에 대한 위험 인수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적절한 보험종목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캡티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적정 손실 관리 프로그램 도입

적절한 손실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수한 계약을 관리하고, 목표지향적으로 손실을 통제하는 운영방식을 도입한다.

(3) 프론팅과 재보험의 이용

프론팅 보험사 및 재보험사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적절한 위험 분산을 도모한다.

(4) 모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모기업은 위험에 대응되는 적절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충분한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5) 위험관리 목적의 캡티브 운영

모기업이 단순히 세금혜택만을 위해서 캡티브를 운영하기 보다는 대체위험전가 수단으로서 캡티브를 인식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 6장 캡티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변화

2003년도 이후 정부가 추진중인 글로벌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유치를 통한 금융허브로의 진행을 보완한다는 면에서 캡티브 보험사는 그 대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에는 현재 캡티브 보험사가 설립되고 있는 지역이 없으므로 적절한 제도 마련시, 보험 허브로의 진행이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캡티브 보험사 유치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미국 버몬트주의 제도개선 사례를 먼저 알아본다.

### 1. 미국 Vermont주의 캡티브 활성화 방안

1960년도부터 보험사의 설립이 활발히 진행된 미국 버몬트주의 경우, 1981년 특별 보험자 법안(Special Insurer Act)를 통해 캡티브 보험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부여한 결과, 현재 세계 3대 캡티브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동 법안의 목적은 캡티브 보험사의 운영을 위해 모기업에 기업 친화적 환경(business friendly climate)을 제공하는데 있었다.

동 법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단일 모기업, 협회 및 그룹의 캡티브 보험사 설립 허용
- ② 버뮤다, 케이먼 등 타 경합지역과 유사한 자본 요구 조건
- ③ 고용자 보상, 임직원 배상책임 및 재산 손해배상 등 모든 상업보험 종목에 대한 인수 허용
- ④ 요율과 약관 신고제로 전환
- ⑤ 최소 보험료 기준 철폐
- ⑥ 순수 캡티브사에 대한 투자 제한 철폐
- ⑦ 세제 혜택 부여 등

한편, 2003년 이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종업원 복지, 생명보험 인수를 허용하고, 순수 캡티브에게 비관련 부문 인수 허용, 재무 정보 비밀보장 및 지점의 국내외 설립 자유화 등을 실시하여 현재의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

다. 또한, 2008년과 2009년도에 캡티브 자본 구성에 지급보증 사용을 허가했으며, 2009년도 후반기 이후 설립되는 캡티브사에 대하여는 2010년도까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캡티브 보험사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 캡티브 보험사에 대한 미국 연방 세법 규정

일반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캡티브 보험사도 미국 세법 Chapter L(Internal Revenue Code Sub-chapter L)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162조 a항에 따라, 캡티브에 대한 보험 가입기업은 보험료에 대하여 손비인정 된다. 캡티브의 보험료 수입에 대한 세무 처리 방법은 설립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 (1) 외국에 설립한 캡티브에 대한 세금 부과

951조에서는 미국기업이 의결권의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 소재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소득 등은 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외국에 설립한 캡티브의 보험 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보험사를 운영할 경우, 953조 d항에 의거, 미국내 보험사로 취급되도록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기 951조의 적용을 면제 받으며, 4371조에 따라 외국 보험사에 적용되는 영업세<sup>9)</sup>도 면제받는다. 최근의 미국내 세법 개정 추이<sup>10)</sup>는 조세 피난처에 설립한 보험사에 대한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국외 세금 납부가 적법한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 (2) 미국내 캡티브에 대한 세금 부과

30개 이상의 미국 주에서 캡티브 보험사의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캡티브도 953조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캡티브에 대하여는 특별히 세법상 우대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3가지 안전 피난처 수입에

9) 4371조에 따라, 미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보험사는 재산보험료 수입에 대해 4%, 생명보험 및 재보험 수입보험료에 대하여 1%의 세금이 부과된다.

10) 2009년 3월 Levin(Michigan) 상원의원의 발의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세금 납부 문제 증빙의 명확화에 대한 입법(The Stop Tax Haven Abuse Act)이 추진되고 있으며, Diggett(Texas) 하원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입법을 청원하고 있다.

대한 규칙(Safe\_harbor revenue Rulings)의 적용 여부가 심사된다.

가. 규칙 2002-89

IRS는 캡티브를 통한 적절한 위험 전가(risk shifting & distribution)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모기업의 보험료가 전체 수입보험료의 50%를 초과할 경우, 모기업이 적절한 위험전가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

나. 규칙 2002-90

동일 모기업의 자회사가 캡티브에 납부한 보험료 중 12개사 까지의 납부분은 공제가능 보험료(deductible insurance premium)로서 손비 인정된다.

IRS의 캡티브 보험료 공제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캡티브사는 적절하고 세금회피 목적이 아닌 선의로 설립되었는지 여부
- ② 모기업이나 제3자의 캡티브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없을 것
- ③ 캡티브와 모기업 및 모기업 자회사간의 대출거래가 없을 것
- ④ 캡티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회사에 대한 시장요율 대비 적정성
- ⑤ 자회사의 납부 보험료가 손실 충당을 위해 적절히 결합(pooling)될 것
- ⑥ 자회사 위험의 5%~15% 범위로 보장범위가 한정될 것

다. 규칙 2002-91

동 규칙은 캡티브 모기업이 다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의 그룹 캡티브에 적용되는데, 각각의 기업이 자체 위험의 15% 내에서만 캡티브에 부보험을 전제로 선의 설립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요인은 다음과 같다.

- ① 보험계약자가 실제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 ② 보험요율이 시장 대비 적절한지 여부
- ③ 각 기업이 업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동 위험이 캡티브로 전가되고 있는지 여부

- ④ 부보 위험이 납부보험료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보험증권 포함 여부
- ⑤ 보험금 지급전에 보험금 청구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는지 여부
- ⑥ 캡티브의 운영과 자산이 주주들의 사업 운영 및 자산과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 (3) 캡티브에 대한 세금 부과

831조 b항에 의거, 보험사의 연간 보험료 수입이 US\$1.2백만 이하일 경우, 동 보험료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sup>11)</sup>. 동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캡티브의 주사업<sup>12)</sup>이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재보험 사업이어야만 한다. 즉, 연간 수입보험료가 캡티브의 다른 수입액을 초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연방 세법외에 각 주별로 캡티브를 규율하는 별도의 세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캡티브는 주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 주마다 캡티브에 대하여 일반 보험사에 부과되는 형식의 최저 자산 및 자본 보유액, 준비금 보유액(통상 US\$250,000)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캡티브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

## 3. 캡티브 도입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

전문인력, 인프라 등 현재 및 향후 국내 여건 감안시, 캡티브 도입은 단기적으로 은행이나 자산운용 분야에 비하여 금융클러스터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서울과 부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클러스터 중에서 서울 보다는 균형적 발전,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고 관련 인프라를 갖추기 수월한 부산지역에 캡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경우 동 정책의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부산이 이미 선박금융의 특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모색중인 바,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을 이용하면 목표 달성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제주도에서의 캡티브 도입은 관련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고 접근성이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오키나와에 캡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준비가 한창인 시점에서

11) 보험료 수입 중, US\$1.2백만에 대하여 공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간 총 수입보험료가 동 금액에 미달하여야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2) 수입의 50%가 보험사업에서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빠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사 유치를 통한 금융허브 정책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외국 금융사의 유치는 홍보와 노력보다는 금융사가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특성이 있는 바, 차별적인 인센티브의 도입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이 이익이 되는 환경을 시급히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미국 버몬트 주의 모델을 도입하여 캡티브 분야에서는 국내 제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캡티브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 (1) 설립 요건 완화

다양한 형태의 캡티브 설립을 허용하고, 역외 캡티브의 유인책 중 하나인 최소자본요건을 경쟁지역 수준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 수입에 대하여는 면제 또는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수입보험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허브의 궁극적인 목표가 글로벌 금융회사 영입을 통한 금융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으로 판단되는 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일정 비율의 직원에 대하여 국내 인력의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 (2) 설립형태 및 운영 종목 자유화

single captive, group captive 또는 rent-a-captive 등 모기업의 전략에 맞는 캡티브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위험에 대하여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영 종목을 자유화하고 보험료 및 약관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 (3) 캡티브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부과

캡티브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보고의무만을 부여하고 건전성 감독 등은 제 3의 독립적인 회계사의 감사만을 받도록 한다. 건전성 기준에의 합치 여부는 공신력 있는 회계감사 자료로만 판단하고 설립 초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의무를 유예한다.



#### (4) 운영 자율성 보장

캡티브의 보험 인수외에 투자활동의 제한도 폐지하여 원활한 사업을 가능하게 하며, 법인세 보다는 면허세, 영업세 형태의 세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한다.

## 제 7장 결론

캡티브는 기존의 보험산업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기업의 특화된 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이다. 캡티브를 통한 세제 혜택 및 자산 보호 목적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 전문가의 양성, 다양하고 복잡한 위험 분석 방법의 습득 및 설립 지역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설립준비의 비용에 불구하고,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통해 모기업에게 중요한 재무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캡티브 설립의 국제적인 추세는 설립 거점지역을 기존의 버뮤다, 케이먼 및 바베이도스 등 소위 조세피난처 외에도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있는 자국내에도 많이 설립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경쟁적인 인센티브 부여시, 캡티브 보험사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내의 금융환경과 경쟁력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하여 아직도 열악한 수준에 있어 곧 바로 많은 수의 캡티브를 유치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적으로 보험사를 소유하지 않은 국내 대기업과 업종별 중소기업 전용의 캡티브 설립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하겠다.

2008년도 SIFIC 평가에 의하면, 국내 금융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분야가 외국 인력이 근무할 인프라의 부족인데 그런 면에서 일본인의 거주가 증가하고 사무환경 등이 조성되어 있는 부산 지역이 아시아 캡티브 허브로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 금융허브 추진 전략의 허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지역본부 유치 방침인데, 이는 현재의 글로벌 금융환경하에서 더 이상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이다. 원래의 방향은 글로벌사의 유치에 앞서 우리 금융기관들의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내 영

업환경을 글로벌화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였는데, 이는 정책 당국이 국내 금융기관의 현실과 경쟁력 부족을 인지하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의 추진이 오히려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허브의 목표는 당분간 계획 대비 실적 달성이 어려울 것인 바, 그 대안으로서 캡티브 허브화의 추진을 주장하고 싶다. 여러 제도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많은 이해관계자의 토론과정이 필요하겠지만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금융허브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은 무리한 목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와 아울러, 보험허브를 위한 추가적인 분야로서 재보험 거래소의 설립도 주요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중인 대체거래시스템(ATS)이 2005년도 한국형 ECN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제도<sup>13)</sup>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현실의 최적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불행히도 2012년도 금융위의 금융허브 추진 대책에 대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추진 효과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보험 분야에 대하여는 『상품개발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라는 한 줄의 방안만이 제시되어 있는 바, 은행 및 투자 금융 분야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전혀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수립의 기본적인 방식(목적과 수단의 적합성)도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험허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금융위의 성공적인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고를 마친다.

---

13) 미국 대체거래시스템의 성공은 거래 및 주문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른 바탕에 기인하고 있다. 시장 미시구조(Market microstructure)가 완전히 다른 시스템에서의 성공모형을 답습하는 방안의 실패를 이미 최근에 우리는 경험하였다.

## REFERENCES

Kaler, I., K. Rand, C. Sheridan and C. Kogut, 2011, Maximizing Captive Values Through Teamwork, Bermuda Captive Conference

Kotch, K, 2009, Captive Insurance Companies: Risk Transfer, Taxation, and trends for 2010, *Journal of State Taxation*, Nov.-Dec., pp.39-43

KPMG, 2010, KPMG LLP 2010 Captive Insurance Benchmark Study

RBC Trust Co., 2009, Understanding Captive Insurance Companies

Theriault, P., 2008, What to consider Wh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Captives, *Wilmington Trust Corporation*

Vermont Dep. of Taxes, 2010, Captive Insurance Premium Tax Return Form, Vermont